다문화가족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1
1. 다문화가족 개관 4
1.1. 다문화가족 개관 4
1.1.1. 다문화가족의 개념 4
1.1.2. 다문화가족 지원 개요 5
1.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2. 다문화가족의 성립 9
2.1. 결혼 9
2.1.1. 다문화가족의 구성 9
2.2. 출입국 9
2.2.1. 입국 9
2.2.2. 체류 11
2.3. 국적 15
2.3.1. 국적 취득 15
3. 다문화가족 생활 19
3.1. 국내정착 19
3.1.1. 사회적응 지원 19
3.1.2. 주택 지원 23
3.1.3. 취업 지원 24
3.2. 자녀양육 25
3.2.1. 임신 및 출산 25
3.2.2. 보육 27
3.2.3. 교육 28
3.2.5. 취업 30
3.3. 가족간 법률문제 30
3.3.1. 평등한 가족관계 30
3.3.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31
3.3.3. 이혼 등 34
3.3.4. 상속 36

1. 다문화가족 개관

1.1. 다문화가족 개관

1.1.1. 다문화가족의 개념

다문화가족의 개념

"다문화가족"이란?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제1호).

▪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적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구분	내용
출생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따라 인지(認知)된 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다문화가족의 성립-국적-국적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결혼이민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다문화가족 지원 개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2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함)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이상의 범위에서 위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3항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호].

▪ 방송사업자는 위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4항).

▪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5항 전단).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를 제공받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2항).

▪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3항).

※ 위 방문교육 비용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2026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항).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4항).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위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제2항).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

※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

다국어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령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복권수익금 등에서의 지원

▪ 복권수익금과 복권기금 중 일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

※ 다문화가족 포털사이트인 다누리(http://www.liveinkorea.kr)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한국생활 정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및 외국어 상담 등이 지원됩니다.

1.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3 및 제17조제1항).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을 하며, 센터 내방 다문화가족을 위한 '집합교육'과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다국어 서비스 제공(「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현황은 성평등가족부 다누리 사이트(http://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문화가족의 성립

2.1. 결혼

2.1.1. 다문화가족의 구성

다문화가족의 구성

다문화가족의 구성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등

▪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제1호 및 「국적법」 제4조제1항).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 귀화허가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으며, 각 귀화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다문화가족의 성립-국적-국적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출입국

2.2.1. 입국

외국인의 입국

외국인의 입국

▪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전단).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 국민의 배우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가목)

※ 이 경우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후단).

▪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2.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3.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프로그램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재이수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 국제결혼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신청방법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사회통합정보망 사이트(http://www.socinet.go.kr)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시: 출입국 외국인관서가 지정·공지한 교육일

▪ 장소: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내 이민통합지원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접수증 참조)

>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2. 체류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 자격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결혼이민(F-6)자격

▪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7호).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7호 가목).

▪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3 제2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 신청 기관

▹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신청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제9조의4제2항 및 별표 5의2).

구분	첨부서류
국민의 배우자	√ 혼인성립 증명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소득요건 입증서류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말함)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보증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함)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주거 요건 입증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한 사항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일 것.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은 재입국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제1호).
3.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4.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가. 「형법」 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각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영리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으로 집단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집단 출국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5. 취업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영주(F-5)자격의 신청

▪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F-5)의 자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제2호)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청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1.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
  3.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그 밖에 체류 관련 사항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대상자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2항).

▪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의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이 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제1항).

√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위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 외국인이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

1. 공통사항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2. 국민의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3.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망이나 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 위 규정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체류지 변경신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2.3. 국적

2.3.1. 국적 취득

국적 취득

국적 취득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귀화허가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습니다(「국적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일반귀화

▪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성년(19세 이상) 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

▪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1항).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사람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 및 제5조제1호·제1호의2).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위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위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특별귀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③ 성년일 것 또는 ④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 제5조제1호·제1호의2·제2호·제4호).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 특별귀화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국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와 심사 등

▪ 귀화허가의 신청

▹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4조제5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 및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귀화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등

▹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본문).

▹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다만, 귀화허가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단서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항).

구 분	요 건
종합평가 면제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귀화허가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면접심사 면제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귀화허가 신청자의 귀화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함)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종합평가를 면제한 경우나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 귀화허가의 제한

▹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

√ 귀화허가 신청자의 귀화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3. 다문화가족 생활

3.1. 국내정착

3.1.1. 사회적응 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사회적응 지원

▪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

√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 의료 지원

√ 건강검진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도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2항).

▪ 사회통합 프로그램

▹ 이민자가 국내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이를 이수 시 국적취득 필기·면접시험 면제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디지털포용법」 제24조제1항 및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제2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관련 전화상담을 위한 대표번호(☎1345) 및 외국인종합지원 포탈에서 정보안내와

민원상담 및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정보 제공

▪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다문화가족 포털 사이트인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남녀 결혼이민자용 다양한 한국생활 가이드북, 한국생활이용가이드 책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 등은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은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3항).

▪ 한국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며,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어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도 손쉽게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누리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교육

√ 누리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동영상, 교재 제공

√ 고려사이버대학교 미래교육원 바른한국어

√ 재외동포청 한국어 학습, 한국문화 등 제공

√ EBS 두리안 한국어배움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다문화동화 구연

▹ 오프라인 교육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전국 지역별 오프라인 한국어 교육원(어학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한국어교실 수강모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교육

▪ 가족교육(성평등가족부, 『2026년 가족사업안내(Ⅰ)』,<2026. 1.>, 239쪽 참조)

<table>
<tr><th>항 목</th><th>내 용</th></tr>
<tr><td>내 용</td><td>•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한 믿음과 사랑증진
•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증진
• 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로 소통증진 및 다문화 정체성 함양</td></tr>
<tr><td>대 상</td><td>• 다문화가족 등(센터 회원 정의 참조)</td></tr>
<tr><td>세부 내용</td><td>
<table>
<tr><th>공통필수(14시간 이상)</th><th>선택(예시, 26시간 이상)</th></tr>
<tr><td>• 이중언어 교육지원
※ 이중언어코치 배치센터는 160시간 이상 실시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입학 및 입시 정보 제공
(부모 대상, 연간 4시간 이상)
※상·하반기 각 1회</td><td>• 가족의사소통프로그램
•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 결혼과 가족의 이해, 가족의 의미와 역할
• 아버지교육
•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프로그램
• 자녀교육프로그램 / 자녀성장지원사업 등
• 부모역할교육, 자녀건강지도, 자녀생활지도
• 국내체류 결혼이민자의 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교육프로그램
• 다문화 한부모 양육·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위기지원)
*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중 사례관리, 긴급위기 지원의 실적은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별도사업 탭에서 관리</td></tr>
</table>
</td></tr>
</table>

▪ 그 외의 성평등·인권 교육, 사회통합교육, 상담교육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2026년 가족사업안내(Ⅰ)』, 241-25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격차해소교육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주요사업내용(성평등가족부, 『2026년 가족사업안내(Ⅱ)』, <2026. 1.> , 145~149쪽 참조)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통번역서비스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통번역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내용 통번역
- 교육과정 통번역 지원
-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 행정·사법기관 이용 시 통역(공증 제외)
-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공증 제외)
-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통번역

-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통번역 업무 등

- 모든 서비스는 무료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인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안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577-9337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지원 사업

긴급지원 사업

-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화재, 범죄, 천재지변의 피해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해산·장제·연료비 지원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

▪ 시·군·구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 전화

생활지원 전화

기관	전화번호	내용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 관련 정보 제공 기관안내 및 연계 생활통역 서비스(13개국어) 365일 24시간
국민건강보험	1577-1000 033-811-2000	건강보험에 관한 문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국어) 평일 09:00~18: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평일 (오전 09:00~11:50 , 오후 13:00~17:5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민사·형사·가사·사건 상담 서비스 제공 평일 10:00~18:00
통역봉사서비스 (bbb코리아)	1588-5644	서비스의뢰인, 외국인, BBB봉사자의 3각 통화로 이루어지는 24시간 통역 서비스
120 다산콜센터 (외국어 상담)	120+9	교통 정보, 수도 요금, 지방세, 민원 신고, 정책 문의 등 상담 서비스 제공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5개국어) 평일 09:00~18:00

3.1.2. 주택 지원

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

신청방법

▪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특별공고문에 명시된 기준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가족사업안내(Ⅱ)』, <2026. 1.>, 369~374쪽 참조).

▹ 알선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최근 10년 간 전국단위, 세대구성원 전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소득증빙서류
- 필요시 :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장애인증명서, 입양 확인 서류(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임대주택 등의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3. 취업 지원

직업교육 및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구분	대상	신청방법
결혼이민여성 인턴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자녀와 그 보호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신청 (1544-1199)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된 구직희망 여성결혼이민자	
새일센터 인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자 출산, 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여성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교육 훈련생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함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구인구직등록 후 상담 등을 통하여 취업 알선	고용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국번없이 1350)
의료통역 및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국내거주 외국인 또는 한국 국적 취득자 등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자(중국·몽골·베트남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www.kohi.or.kr)

3.2. 자녀양육

3.2.1. 임신 및 출산

임신과 출산

다문화가족의 임신과 출산

▪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11조).

임신·출산 서비스

임신·출산 서비스

▪ 다문화가족은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 등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출생

출생신고

▪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 ※ 출생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결혼이민자-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의 장소

▪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 출생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3.2.2. 보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

> ※ 아동양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영유아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의 특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1월 2일 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
-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을 제공받는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6항).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5호).

>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3. 교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

다문화가족 아동 차별 금지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또는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과 후 사업은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2026년 가족사업안내(Ⅱ)』, <2026. 1.>, 127쪽 참조).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성평등가족부, 『2026년 가족사업안내(Ⅱ)』, 131쪽 참조)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12세 이하.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의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해 우선 선정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바우처를 받고 있거나 기타 무료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촉진 및 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주요사업 내용(성평등가족부, 『2026년 가족사업안내(Ⅱ)』, 127쪽 참조)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 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다문화학생의 학교 생활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함)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75조제4항).

다문화학생의 학력 인정

▪ 입학 또는 전학 시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가족의 학생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 귀국자 편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언어 강사

▪ 다문화가족의 학생에게는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의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에게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에 다문화언어 강사를 둘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다문화언어 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별표2).

-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3.2.5. 취업

다문화가족 취업 및 직업훈련(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 참조)

다문화가족 취업

▪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됩니다.

※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또는 국번없이 1345)에서 확인 가능

직업훈련

▪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ww.workplus.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24 (www.work24.go.kr)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호).

3.3. 가족간 법률문제

3.3.1. 평등한 가족관계

가족해체 예방

가족해체 예방 등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비롯한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9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9조제2항).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1항).

3.3.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항·제4항).

-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
-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가정폭력 신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제4호·제5호).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호).

▪ 누구든지 위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가해자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체류기간 연장

▪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

▪ 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등은 임시로 보호받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사항에 관해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의 협조와 지원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 피해자는 다음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구분	내용
단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장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치료보호

치료보호

▪ 피해자 본인·가족·친지(親知)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다음의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4.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5.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비용부담

▪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가정폭력행위자가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3.3. 이혼 등

준거법의 결정

이혼의 일반적 효력

▪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준거법"이란 국제사법에 의하여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협의이혼

내용적 요건

▪ 협의이혼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834조).

▹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35조 및 제808조제2항).

절차적 요건

▪ 이혼안내절차와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

▹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민법」 제836조의2제2항),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 이혼신고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이혼에 따른 법률효과

재산분할 청구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및 제830조제2항).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위자료 청구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자녀 친권 및 양육

▪ 친권자의 지정

▹ 협의이혼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 양육자의 지정

▹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37조제6항).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민법」 제768조)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808조제1항),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상속권(「민법」 제1000조제1항)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결혼 이민(F-6)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1.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2.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허가 내용

▹ 심사를 거쳐 결혼 이민(F-6)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됩니다.

3.3.4. 상속

준거법의 결정

준거법의 결정

▪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조제1항).

▪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국제사법」 제77조제2항).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상속

상속 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서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위의 1.과 3.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 생존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는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1.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2.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
4.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1항 및 제5항).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할합니다(「민법」 제1009조제1항).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 ※ 재산상속·보험금 강제서명 방지 등 결혼이주여성 대상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교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재산상속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상속 관련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하여 법원 및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